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6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 박재호·허 영·정춘숙

조정식・홍성국・김윤덕

오영환 · 김정호 · 이용빈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 11. 21.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2. 10. 23. 제정되었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 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법률 제 호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